

2025년 제1회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 나. 의안번호 : 제2697호
- 다. 제출일자 : 2025. 5. 26.
- 라. 회부일자 : 2025. 5. 29.

2. 제안이유

-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한 일상 등을 위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3.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가. 세입예산안

- 2025년 제1회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71억 9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67억 98백만 원 대비 3.1% 증액(3억 97백만 원) 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5년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감률
총 계	6,798	7,195	397	5.8%
보 조 금	6,798	6,808	10	0.1%
국고보조금등(기금)	6,798	6,808	10	0.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387	387	순증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387	387	순증

나. 세출예산안

- 2025년 제1회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은 541억 12백만 원으로 기정 예산 540억 64백만 원 대비 0.1% 증가(48백만 원)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감률
총 계		54,064	54,112	48	0.1%
일반회계	소 계	54,064	54,112	48	0.1%
	행정운영경비	339	339	-	-
	재 무 활 동	4,602	4,602	-	-
	사 업 비	49,123	49,171	48	0.3%

4.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안

- 2025년 제1회 글로벌도시정책관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67억 98백만 원 대비 3.1%인 3억 9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2025년 제1회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세입예산안 >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5년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감률
총 계	6,798	7,195	397	5.8%
보 조 금	6,798	6,808	10	0.1%
국고보조금등(기금)	6,798	6,808	10	0.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387	387	순증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387	387	순증

- 이번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기금) 항목에서 10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4년 가족센터 운영지원사업’, ‘서울시 가족센터(다문화가족 거점센터) 운영’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 8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제1항¹⁾에 따라 국고 집행잔액 및 이자는 결산 이후 국고에 반환해야 하므로 보조금 반환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 2025년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금액 >

사업명	변경액	공 문
합 계	10,159 천원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지원(다문화가족)	△13,950 천원	- 2025년 가족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변경내시(1차) 통보 여가부 가족정책과-107 (2025. 1. 9.)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	23,907 천원	- 2025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여가부 다문화가족과-4750 (2024. 12. 18.)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202 천원	- 2025년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여가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3232 (2024. 12. 13.)

< 2024년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결산(정산)내역 >

사업명	보조금반납금	공 문
합 계	387,078 천원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지원(다문화가족)	383,939 천원	- 2024년 가족센터(다문화가족) 운영지원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서울시) 다문화담당관-4218 (2025. 4. 1.)
서울시 가족센터(다문화가족 거점센터) 운영	638 천원	- 2024년 서울시 다문화가족 지원거점센터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다문화담당관-3930 (2025. 3. 26.)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2,501 천원	- 2024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실적 및 정산결과 제출 다문화담당관-3675 (2025. 3. 20.)

(2) 세출예산안

- 2025년 제1회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40억 64백만 원 대비 0.1%인 48백만 원을 증액조정하는 것으로, 4개 사업에서 총 95백만 원을 증액하고, 1개 사업에서 47백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증액 내역은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80백만 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4백만 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1백만 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민간위탁사업비)’에 40만 원 등 총 95백만 원임
-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감액 내역은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지원(다문화가족)(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47백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임

〈 2025년 제1회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통계목	기정 예산	요구 금액	추경 예산(안)	요구사유
계(5건)			(x6,782) 21,311	(x10) 48	(x6,791) 21,359	
1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	소계	(x1,845) 6,150	(x24) 80	(x1,869) 6,230	• 확정내시 국비 금액 증가에 따른 시비 매칭을 위한 증액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1,845) 6,150	(x24) 80	(x1,869) 6,230	
2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	소계	(x138) 341	(x-) 4	(x138) 345	•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 따라 인건비 인상을 반영을 위한 증액 편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x138) 341	(x-) 4	(x138) 345	
3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소계	(x1,357) 3,380	(x-) 11	(x1,357) 3,391	•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 따라 인건비 인상을 반영을 위한 증액 편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x1,357) 3,380	(x-) 11	(x1,357) 3,391	
4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소계	(x25) 50	(x0.2) 0.4	(x25) 50	• 확정내시 국비 금액 증가에 따른 시비 매칭을 위한 증액
		민간위탁 사업비	(x25) 50	(x0.2) 0.4	(x25) 50	
5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지원(다문화가족)	소계	(x3,417) 11,390	(x△14) △47	(x3,403) 11,343	• 국비 지원금액 변경에 따른 감액 조정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3,417) 11,390	(x△14) △47	(x3,403) 11,343	

나. 세출예산 사업별 검토

(1) 증액 사업

①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 (사업별설명서 P.157~160, 예산서 P.117)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사업은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이중언어학습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치구 가족센터(25개소)를 통해 수행하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확정내시 국비 금액 증가(24백만 원)에 따른 시비 매칭을 위하여 기정예산 61억 50백만 원 대비 80백만 원(1.3%)을 증액한 62억 30백만 원을 편성하고자 함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1,869,051) 6,230,170	(x1,845,144) 6,150,480	(x23,907) 79,69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1,869,051) 6,230,170	(x1,845,144) 6,150,480	(x23,907) 79,690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여성가족부→서울시→자치구→가족센터(자치구)’로 예산이 교부되며, 5개 내역사업²⁾을 추진 중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방문교육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교육 등 3개 사업에 80백만 원(국비 24백만 원, 시비 56백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비 확정내시³⁾에 따른 증액 편성이므로 적절하다고 하겠음

2) 다문화가족지원 특성화사업 내역사업

: 방문교육서비스, 결혼이민자 통번역, 자녀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한국어교육

3) 2025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4750(2024.12.18.)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증감 내역 〉

과목구분	2025년 본예산	2025년 추경예산(안)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방문교육사업 = 1,802,250천원	= 1,824,500천원 (+22,250천원)
	○언어발달지원 = 1,252,200천원	= 1,293,940천원 (+41,740천원)
	○이중언어교육 = 204,100천원	= 219,800천원 (+15,700천원)
	증감사유	
	확정내시금액 국비 증가에 따른 시비 매칭액 증가 - 증가액 79,690천원 : 국비 23,904천원, 시비 55,783천원 - 관련대호 : 여가부 다문화가족과-4750(2024.12.18.)	

②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 (사업별설명서 P.161~164, 예산서 P.117)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을 통한 피해자 인 권보호를 위한 상담소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3억 41백 만 원 대비 4백만 원(1.2%) 증액한 3억 45백만 원을 편성하고자 함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138,123) 344,561	(x138,123) 340,836	(x-) 3,725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x138,123) 344,561	(x138,123) 340,836	(x-) 3,725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 사업의 예산은 ‘상담소 운영(인건 비·운영비·사업비) 지원(국비 50%, 시비 50%)’과 ‘종사자 처우개선비(시비 100%)’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⁴⁾에 따른 상담소 종사자 인건비 증 액분을 반영한 것임

4)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복지정책과-1454 (2025. 1. 16.)

-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대시민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2013년부터 관련 정책을 지속하여 추진해 오고 있음. 2025년에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3%) 적용, ▲하위직급·저연차 직원의 호봉 구간 일부에 대한 봉급 추가 인상(0.4~0.8%), ▲정액급식비 인상(월 12만 원 → 13만 원) 등을 시행하게 됨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역 〉

과목구분	2025년 본예산	2025년 추경예산(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종사자 처우개선비 = 64,590천원	= 68,315천원 (+3,725천원)
	증감사유	
	종사자 인건비 인상(2.5%→3.0%)에 따른 증액분(0.5%) 반영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복지정책과-1454(2025.1.16.)호	

- 글로벌도시정책관은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해당 상담소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을 2.5%로 적용하였으나, 변경된 처우개선 운영계획에 따라 재계산한 결과 4백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여 이번 추경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시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에 따른 예산증액편성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대시민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③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별설명서 P.165~170, 예산서 P.117)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을 통한 피해자 인권보호와 자립을 돕기 위한 보호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33억 80백만 원 대비 11백만 원(0.003%) 증액한 33억 91백만 원을 편성하고자 함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1,356,719) 3,391,273	(x1,356,719) 3,380,486	(x-) 10,787
사무관리비	(x-) 27,673	(x-) 27,673	(x-) 0
공공운영비	(x-) 1,000	(x-) 1,000	(x-) 0
민간위탁금	(x617,530) 1,471,721	(x617,530) 1,471,721	(x-) 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x644,689) 1,701,879	(x644,689) 1,691,092	(x-) 10,787
사회복지사업보조	(x94,500) 189,000	(x94,500) 189,000	(x-) 0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⁵⁾에 따른 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임.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대시민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2013년부터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음. 2025년에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3%) 적용, ▲하위직급·저연차 직원의 호봉 구간 일부에 대한 봉급 추가 인상(0.4~0.8%), ▲정액급 식비 인상(월 12만 원 → 13만 원) 등을 시행하게 됨
-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은 쉼터 4개소, 그룹홈 2개소, 자활지원센터 1개소 등 총 7개소의 보호시설을 운영중이며, 인건비 인상률 반영 시 예산 증액이 필요한 쉼터 4개소의 보호시설에 총 11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서울시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에 따른 예산증액편성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대시민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 됨

5)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복지정책과-1454 (2025. 1. 16.)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역 〉

과목구분	2025년 본예산	2025년 추경예산(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쉼터(4개소) 및 그룹홈(1개소) 처우개선비 = 401,714천원	= 412,501천원 (+10,787천원)
	증감사유	
	종사자 인건비 인상(2.5%→3.0%)에 따른 증액분(0.5%) 반영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복지정책과-1454(2025.1.16.)호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내역 〉

과목구분	2025년 추경예산 증액 내역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서울이주여성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 2,818 천원
	○벗들의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 3,162 천원
	○행복이주여성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 727 천원
	○마리아주여성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 4,080 천원
	합계 : 10,787 천원	

* 종사자의 경력, 호봉 등에 따른 개인별, 쉼터별 차이 발생

④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사업별설명서 P.171~174, 예산서 P.117)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사업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7개소) 기능 보강을 통한 시설 안전 강화 및 입소자 이용 편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국비 매칭 사업임. 확정내시⁶⁾ 국비 금액 증가에 따라 시비 매칭을 위하여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25,032) 50,064	(x24,830) 49,660	(x202) 404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x17,830) 35,660	(x17,830) 35,660	(x-) 0
민간위탁사업비	(x7,202) 14,404	(x7,000) 14,000	(x202) 404

6) 2025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4750(2024.12.18.)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역 >

과목구분	2025년 추경예산(안)	
민간위탁 사업비	○시립마리공동체 203호 방염도배 202,000원*2개 방	= 404천원
	증감사유	
	확정내시금액 국비 증가에 따른 시비 매칭액 증가 - 증가액 404천원 : 국비 202천원, 시비 202천원 - 관련대호 : 여가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32332(2024.12.13.)	

(2) 감액 사업

①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 지원(다문화가족) (사업별설명서 P.153~156, 예산서 P.117)

○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 지원(다문화가족)’ 사업은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 사회·경제적 자립 도모를 위한 국비 매칭 사업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⁷⁾ 및 변경내시⁸⁾으로 인한 감액 조정에 대한 것임. 기정예산 113억 90백만 원 대비 47백만 원(0.4%)을 감액 조정하여 113억 43백만 원을 편성함

<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 지원(다문화가족)’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3,402,903) 11,343,010	(x3,416,853) 11,389,510	(x△13,950) △46,5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3,402,903) 11,343,010	(x3,416,853) 11,389,510	(x△13,950) △46,500

7) 2025년 가족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 여가부 가족정책과-4071, 2024. 12. 18.

8) 2025년 가족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변경내시(1차) 통보, 여가부 가족정책과-107, 2025. 1. 9.

〈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 지원(다문화가족)’ 사업 추가경정예산 세부 내역 〉

과목구분	2025년 본예산	2025년 추경예산(안)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 5,685,610천원	= 5,644,110천원 (△41,500천원)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 563,000천원	= 558,000천원 (△ 5,000천원)
	증감사유	
	확정내시금액 국비 감소에 따른 감액 편성 - 관련대호 : 여가부 가족정책과-4071(2024. 12. 18.)- 확정내시 여가부 가족정책과-107(2025. 1. 9.)- 변경내시	

-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 지원(다문화가족)’의 세부사업 중 ‘다문화가족 자녀지원’과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에서 금액 조정이 있었으며, 사업 단가 조정 혹은 전담인력 조정 등으로 인한 감액으로 확인됨. 국비 내시금액 변경에 따른 감액 조정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다. 종합의견

-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인 3억 97백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40억 64백만 원 대비 48백만 원(0.1%)을 증액한 541억 12백만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감액사업 1건과 증액사업 4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 추가경정세입예산안 증액 3억 97백만 원은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10백만 원과 2024년 국비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 87백만 원으로 구성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제 1항에 따라 국고 집행잔액 및 이자는 결산 이후 국고에 반환해야 하므로 보조금 반환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은 적절하다고 하겠음

- 추가경정세출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 지원(다문화가족)’ 사업의 47백만 원 감액은 단가 및 전담인력 조정 등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을 위한 증액으로,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은 방문교육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교육 등 3개 내역사업에 80백만 원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은 시설 기능 보강을 통한 안전 강화 및 입소자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4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으로 적절하다고 하겠음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증액은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임. 2025년 인건비 증액 주요 내용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3%) 적용, 하위직급·저연차 직원 호봉 구간 일부에 대한 봉급 추가 인상(0.4~0.8%), 정액급 식비 인상 등이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대시민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이번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증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문화가족 지원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원 확보와 재정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하겠음